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63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국가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2200002	박충권의원	2024. 5.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7.1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11.7.) 상정
기인 이공계지 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5008	이정헌의원	2024. 10. 2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0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 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11.7.) 상정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11. 7.)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

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 4. 11. 11.)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통상, 경제, 외교·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성·유치·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 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필요함.

2004년 현행법을 제정한 이후 우수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만 개정되어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어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안보 차원 세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에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 공계 인재·해외 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명칭을 이공계인력 조사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사고를 장려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

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장려금 환수대상을 축소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마.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사. 정부는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아.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 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자.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 6의3.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
- 6의4.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제7조의 제목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공계인력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를 "이공계인력 조사의"로,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를 "등에"로 한다.

-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 에 관한 실태조사
-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 4. 이공계 석·박사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 5.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과학 교 과 교육 방법 고도화
-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제9조의 제목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를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급범위 및 생활비융자지원 등에)"를 "(지급범위, 생활비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로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학을 중단한 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제9조의3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 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 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방 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재교육·재훈련"을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재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각각 "재교육등"으로 한다.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 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제21조의2·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 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연구장려금 제공
 -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 3. 구인 · 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창업,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 2. 해외진출 지원
 -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4조의2(일·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 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장려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
	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
	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u>야 한다.</u>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
	<u>원 강화</u>
<u> <신 설></u>	<u>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u>
	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
	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u>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u>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
	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신 설>

7. (생략)

④ (생략)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한다.

대한 참여 확대

6의3.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

- 6의4.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 7.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① 정부 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 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 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 4. 이공계 석・박사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

 태조사
- 5. 이공계인력의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에 관한실태조사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 란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 내외 유입·유출 현황을 지표 (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2
이공계인력 조사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크레시크 카케스 스키티크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u>이공계인덕 성책을 구립하고</u>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① (생 략) <신 설>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 학습동기 고취) ① (현행과 같 음)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 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 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 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 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 의 수학 · 과학 교과 교육 방 법 고도화
-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의 개발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 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u>②</u>· <u>③</u> (생 략)

제9조<u>(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u> <u>회 확대)</u> ① (생 략) <u><신 설></u>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생활비 융자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 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u> 구약· 과약 접근장 등대 및</u>
정보 격차 해소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
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u>③</u>
<u>지급범위, 생활비융</u>
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 1. 수학을 중단한 때
<u>1. 1 기리 0 년 단 때</u>

-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 학 · 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② · ③ (생 략) <신 설>

-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 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 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 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 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 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u><신 설></u>

<신 설>

<u>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u> 한다.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 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 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 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 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 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 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 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 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

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 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권 익보호·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 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 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 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운영
 -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제12조(이공계인력의 <u>재교육·재훈</u> 전 <u>련</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u>재교육 또는 </u> <u>재훈련</u>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재교육 또는</u> <u>재훈련</u>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
	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u> </u>
	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
	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
_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2조(이공계인력의 <u>재교육 등</u>)
	①
	재교육, 재
	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
	육등"이라 한다)
	<u> </u>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u>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u>, , , , , , , , , , , , , , , , , </u>

5.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 에 따른 <u>재교육 또는 재훈련을</u>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u>재교육 또는</u> <u>재훈련</u>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5조<u>(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u> 저 <u>공계인력의 활용 촉진)</u> (생 략)

<신 설>

<신 설>

5. (현행과 같음)
③
<u>재교육등</u>
<u>재교육등</u>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u>활동 지원)</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
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 활
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
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
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
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u>수 있다.</u>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

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 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 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

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 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연구장려금 제공
-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제공
- 3.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및 정착 지원
-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 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신 설>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 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창업, 콘텐츠 제작·유통 지 원
- <u>2.</u> 해외진출 지원
-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4조의2(일·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일·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마련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 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 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 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만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